

국적이탈 신고서

※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확인
신고인	성명(한글)	(한자) 성별 [] 남 [] 여
	성명(외국명)	생년월일
	출생지	외국 국적
	전화번호	전자우편(E-mail)
	외국주소	
	주민등록 여부	[] 주민등록 []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주민등록지

사진
3.5cm×4.5cm

복수 국적	대한민국 국적	취득일	년	월	일
		취득원인	출생()	기타()	
	외국 국적	취득일	년	월	일
		취득원인	출생()	기타()	

가족	관계	성명	직업	국적	주소

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(법정대리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신고인 (법정대리인) 제출서류	1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.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.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「국적법」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※ 제4호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	수수료 1인당 1만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병적증명서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